

대전지방법원 2024. 10. 10 선고 2024가단1863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9. 26.

판결 선고2024. 10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46.23㎡(D호)를 인도하고,
나. 2023. 4. 30.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송현직

별지